

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9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국적				
	② 성명(대표자)		④ 설립연월일				
	⑤ 주소	(전화번호:)					
⑥ 사업의 종류			⑦ 운항개시예정일				
⑧ 항로구간			⑨ 운항횟수				
⑩ 사업개요							
「해운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자국에서 취득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허가증서 사본 1부 2.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사본 각 1부(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외국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계획서 1부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제출합니다)			2만원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